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사례와 그 시사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Regulatory Cases on Judge's Stockholding and Trading and Their Implications

김 정 환**

KIM, Junghw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줄 수 있는 시사점 |
| II.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영국의 규율 및 사례 | V. 결론 |
| III.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미국의 규율 및 사례 | |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중요하듯이 법관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중에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는 이해충돌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이 글은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규정과 대표적 판례를 중심으로

<https://doi.org/10.35148/ilsilr.2023..56.41>

투고일: 2023. 11. 30. / 심사완료일: 2023. 12. 26. / 게재확정일: 2023. 12. 27.

* 본 논문은 저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김정환),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2021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Research Fellow,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JPRI), Ph.D. in Law

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해당 국가의 사례에서 현행 우리의 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해충돌, 법관의 부적격,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 자동적 회피의 원칙, 법관행동강령

I. 서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¹⁾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관의 경우에도 이해충돌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²⁾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는 이해충돌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해서는 다수의 규정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율체계나 방식이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이해충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한 논의의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규정과 대표적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해당 국가의

1)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2012, 7쪽).

2) 이는 법관의 이해충돌이 법관의 형평성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자세한 내용은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Commentary on 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2018, p. 44: <https://www.unodc.org/res/ji/import/international_standards/commentary_on_the_bangalore_principles_of_judicial_conduct/bangalore_principles_english.pdf>, last visited: Nov. 24, 2023.

사례에서 현행 우리의 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영국의 규율 및 사례

1. 들어가며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법관의 부적격(disqualification)에 대한 영국의 논의와 사례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이는 다른 코먼로 계열 국가의 이론과 실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³⁾ 그중에서도 법관의 주식보유로 인한 부적격에 관해서는 아래의 *Dimes v Proprietors of Grand Junction Canal* 사건⁴⁾을 그 시초로 보며, 해당 사건은 코먼로 계열의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⁵⁾ *Dimes* 사건은 아무리 작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해당 법관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단 1주의 관련 있는 주식의 보유(however small)라도 법관의 부적격 사유로 본다는 원칙의 기초가 되었으나, 이후 이러한 원칙의 수정으로 합리적으로 법관의 불공정성이 의심될 만큼 최소한도(*de minimis*)의 주식보유가 있어야만 해당 법관의 부적격 사유가 성립한다는 예외적 원칙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영국에서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하여는 법관행동지침(Guide to Judicial Conduct)에서 공정성과 법관의 경제적 활동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2. 관련 사례

2.1 *Dimes v Proprietors of Grand Junction Canal* 사건

2.1.1 내용

본 사건⁶⁾은 운하가 통과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운하를 운영하는 회사가 토지

3) Grant Hammond, *Judicial Recusal -Principles, Process and Problems-*, Hart Publishing, 2009, p. 19.

4) [1852] 3 HLC 759.

5) Hammond, *Ibid.*, p. 19; Philip Bryden,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Disqualification of Judges", *The Canadian Bar Review Vol. 82 No. 3*, Canadian Bar Association, 2003, p. 555, 556 등.

소유주를 상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⁷⁾ 사건을 담당한 법관[Lord Chancellor(Cottenham)]은 운하를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하게 판결 하였는데, 이후 당해 법관이 운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⁸⁾이 밝혀졌고 이를 이유로 토지소유주는 판결에 불복하였다.⁹⁾

상소심 법원은 법관이 이해충돌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법관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가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중에게 그가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¹⁰⁾ 이에 근거하여 상소심 법원은 법관의 부적격(disqualification) 사유를 인정하였고, 하급심 법원의 법관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판결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당해 재판에서 회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견에 근거한 판결을 하였다는 외관을 창출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¹⁾

2.1.2 의의 및 영향

해당 판결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법관의 부적격 판단에 관한 시작점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¹²⁾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³⁾ 특히 해당 판결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많고 적음 및 법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문제된 법관은 자동적으로 당해 절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원칙(automatic disqualification rule)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¹⁴⁾ 이러한 원칙은 이후 법관의 이해충돌에 대한 접근법에 관한 하나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여졌다고 평가된다.¹⁵⁾

6) [1852] 3 HLC 759.

7) *Dimes v Proprietors of Grand Junction Canal* [1852] 3 HLC 759.

8) 주식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Hammond, *op. cit.*, p. 21).

9) *Dimes v Proprietors of Grand Junction Canal* [1852] 3 HLC 759.

10) *Ibid.*

11) *Ibid.*

12) Frank A. Sharman, “Feudal Copyholder and Industrial Shareholder: The Dimes Case”, *Journal of Legal History Vol. 10 Iss. 1*, Taylor & Francis, 1989, p. 71.

13) Hammond, *op. cit.*, p. 19.

14) Hammond, *Ibid.*, p. 19.

Dimes 사건에서의 원칙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법관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었고, 이는 실무상 많은 이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⁶⁾ 당해 원칙이 가진 이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법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¹⁷⁾ ② 명확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제재를 통하여 사법부의 청렴성을 증진할 수 있고,¹⁸⁾ ③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여 사법부 및 판결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¹⁹⁾ 다만 이와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당해 법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de minimis*) 이해관계가 존재하여야만 법관의 부적격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는 판결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⁰⁾ *Dimes* 사건에서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① 주식보유와 같은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아니하거나 단지 추정에 불과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²¹⁾ ② 해당 원칙은 현재의 발전한 주식시장과 경제 규모, 회사관계법 등에 적용되기에는 지나치게 간략하며 오늘날의 법관은 대부분 주식투자나 보험증권의 보유, 은행 계좌의 개설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²²⁾ 등이 대표적이다.

2.2 *R v Hammond* 사건

본 사건²³⁾은 철도승차권을 발매하지 않고 여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다.²⁴⁾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철도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15) Hammond, *Ibid.*, p. 21.

16) Hammond, *Ibid.*, p. 19.

17) John R. Allison, "A Process Value Analysis of Decision-Maker Bias: The Case of Economic Conflicts of Interest", *Am. Bus. L. J. Vol. 32 Iss. 4*, Wiley-Blackwell, 1996, p. 481, 539; John P. Frank, "Disqualification of Judges", *Yale L. J. Vol. 56 No. 4*, Yale Law School, 1947, p. 605, 609-610.

18) *Ebner v Official Trustee in Bankruptcy* [1999] 91 FCR 353.

19) *Ibid.*

20) Hammond, *op. cit.*, pp. 23-25.

21) *TV Communications Network, Inc. v. ESPN, Inc.*, 767 F.Supp. 1077 (1991); *Exxon Corporation v. Heinze*, 792 F.Supp. 77 (1992).

22) Hammond, *Ibid.*, p. 25.

23) [1863] 9 LT 423.

액수가 많지는 아니하였다.²⁵⁾ 철도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법관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부적격인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그 액수가 1파딩(farthing)²⁶⁾에 불과할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같다면 해당 법관은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부적격이라고 판시하였다.²⁷⁾

해당 판결 또한 앞의 *Dimes*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과 관련된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법관의 주식보유 사실이 존재하는 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 판결이다.²⁸⁾

2.3 *R v Mulvihill* 사건

본 사건²⁹⁾에서 피고인은 여러 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음모로 기소되었다. 대상이 된 여러 은행 중 지점 한 곳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실행되었는데, 사실심 법관이 해당 은행의 주식 1,6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³⁰⁾ 사실심 법관은 주식보유의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후에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만약 사실심 법관의 주식보유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를 기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이다.³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사실심 법관은 당해 사건의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며,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³²⁾ 또한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배심원과

24) *R v Hammond* [1863] 9 LT 423.

25) *Ibid.*

26) 파딩은 영국에서 13세기에 처음으로 주조된 동전이고 그 가치는 약 1/960 GBP에 해당한다(British Farthings, “A Brief History of the Farthing Coin”, <<http://www.britishfarthings.com/history.html>>, last visited: Nov. 24, 2023).

27) *R v Hammond* [1863] 9 LT 423.

28) Frederick F. Shauer, “English Natural Justice and American Due Process: An Analytical Comparison”, *Wm. & Mary L. Rev. Vol. 18 Iss. 1*, Marshall Wythe School of Law, 1976, p. 47, 54.

29) [1990] 1 WLR 438 (CA).

30) *R v Mulvihill* [1990] 1 WLR 438 (CA).

31) *Ibid.*

32) *Ibid.*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법관은 배심원의 존재로 인해 단독으로 절차에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작으며, 그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직접적이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사실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³³⁾

2.4 *Locabail (UK) Ltd v Bayfield Properties Ltd* 사건

해당 사건³⁴⁾은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앞의 *Dimes* 사건 이후 확립된 자동적 회피의 원칙(*automatic disqualification rul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³⁵⁾ 본 사건에서는 병합된 사건에서의 다수의 당사자가 사건을 담당한 법관의 일부에 대한 직접적 혹은 잠재적 불공정 혹은 편견을 이유로 불복하였는데,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³⁶⁾

항소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이해관계의 충돌 기타 법관의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법관의 부적격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³⁷⁾ 그중에서도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적격과 관련하여 문제된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당된 법관은 자동적으로 당해 절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Dimes* 사건 이후의 원칙(*automatic disqualification rule*)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임은 별개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당해 법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도(*de minimis*)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여야만 법관의 부적격 사유가 인정된다는 예외³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항소법원은 보았다.³⁹⁾ 다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문제된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극히 미미하여 그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⁰⁾

33) *Ibid.*

34) [2000] 2 WLR 870 (CA).

35) Hammond, *op. cit.*, p. 23.

36) *Locabail (UK) Ltd v Bayfield Properties Ltd* [2000] 2 WLR 870 (CA).

37) *Ibid.*

38) *BTR Industries South Africa (Pty) Ltd v Metal and Allied Workers' Union* [1992] 4 All SA 701 (AD); *Auckland Casino Ltd v Casino Control Authority* [1995] 1 NZLR 142 (CA) 등.

39) *Locabail (UK) Ltd v Bayfield Properties Ltd* [2000] 2 WLR 870 (CA).

또한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의 부적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항소법원은 판시하였다.⁴¹⁾

3. 법관행동지침

3.1 개관

영국의 법관행동지침(Guide to Judicial Conduct)은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관행동지침(Australian Guide to Judicial Conduct)과 법관윤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Judicial Ethics) 초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⁴²⁾ 영국의 경우 법관 등[상근법관(judge) 외에 치안판사(magistrate), 검시관(coroner)을 포함]에게 업무와 관련된 행동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관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⁴³⁾ 법관행동지침은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이 천명하고 있는 6대 원칙인 독립성(independence)과 공정성(impartiality), 청렴성(integrity), 적절성(propriety), 평등(equality), 능력과 성실성(competence and diligence)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⁴⁴⁾ 2004년 법관협의회(Judge's Council)가 지명한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⁴⁵⁾

법관행동지침은 법관 등의 특정한 행동이 그의 직무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법관의 책임이라는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⁴⁶⁾ 그와 같은 이유로 이는 법관 등의 행동을 구속하는 규정의 의미보다는 법관 등의 판단을 보조하고자 하는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⁷⁾ 다만 개별 법관이 스스로

40) *Ibid.*

41) *Ibid.*

42)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Guide to Judicial Conduct 2013*, 2013, pp. 4-6.

43)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Guide to Judicial Conduct – Revised March 2018", <<https://www.judiciary.uk/publications/guide-to-judicial-conduct>>, last visited: Nov. 24, 2023.

44)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op. cit.*, §§ 1.4-1.5.

45)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Guide to Judicial Conduct – Revised March 2018", <<https://www.judiciary.uk/publications/guide-to-judicial-conduct>>, last visited: Nov. 24, 2023.

46)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op. cit.*, p. 4.

그의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급법관에게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고 법관행동지침은 규정하고 있다.⁴⁸⁾ 이하에서는 여러 내용 중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다루고자 한다.

3.2 내용

3.2.1 공정성 부분

법관행동지침은 공정성 부분에서 법관은 ① 법정 내·외부에서의 행동을 통해 대중의 신뢰와 법관 자신의 공정성 및 사법부의 공정성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②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관의 편견 혹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함으로써 인해 결과적으로 법관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사법 외적 활동(extra-judicial activities)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⁴⁹⁾

3.2.2 법원 외에서의 활동 - 상업 활동 부분

법관행동지침은 법원 외에서의 활동(Activities outside Court) - 상업 활동(Commercial Activities)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상근법관(salaried judge)과 비상근 법관(fee-paid judges), 치안판사(magistrates)는 서로 다른 정도의 제한을 받는데, 제한의 정도는 상근법관이 가장 높으며 비상근 법관과 치안판사는 그다음의 순서로 제한을 받게 된다.⁵⁰⁾ 제한의 정도는 상이하지만 상근법관과 비상근 법관, 치안판사 모두 개인적 이익이나 직업적 이익 또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47) *Ibid.*

48) *Ibid.*

49)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Guide to Judicial Conduct, 2020, p. 6.

50) 일반적으로 상근 법관은 가족 자산의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상업적 회사의 이사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며, 주된 목적이 비영리 활동에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활동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기관과 같은 단체의 비영리 이사 지위를 보유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비상근 법관의 경우 상근 법관과 같은 정도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지만, 비상근 법관 또한 개인적 이익이나 직업적 이익 또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직위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치안판사의 경우에도 상근 법관과 같은 정도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지만, 치안판사 또한 개인적 이익이나 직업적 이익 또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직위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치안판사의 경우 독립적인 사법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목적을 참작하여 개인적이나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이 이해충돌(실제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이해충돌로 인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에 대해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Ibid.* p. 9).

그 직위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법관행정지침에서는 정하고 있다.⁵¹⁾

3.2.3 이해충돌 상황의 처리 부분

법관행동지침은 이해충돌 상황의 처리(dealing with conflicts of interests)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법관은 우선 당사자들이 법관의 부적격에 관한 절차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려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법관의 편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거나 편견의 외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 심리 이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4. 정리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영국의 논의와 사례는 다른 코먼로 계열 국가의 이론과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영국에서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해서는 법관행동지침에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다수의 사례에서 해당 쟁점과 관련한 법관의 부적격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관의 주식보유 관련 사례 중 *Dimes v Proprietors of Grand Junction Canal* 사건⁵²⁾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이며, 사안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단 1주의 주식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R v Hammond* 사건⁵³⁾이나 *R v Mulvihill* 사건⁵⁴⁾ 등과 같이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따른 사례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imes* 사건은 코먼로 계열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코먼로 계열 국가에서 그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는 다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법관의 불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도(*de minimis*)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야 법관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판결이 다수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영국에서도 *Locabali (UK) Ltd v Bayfield Properties Ltd* 사건⁵⁵⁾을 통해 그와

51) *Ibid.*

52) [1852] 3 HLC 759.

53) [1863] 9 LT 423.

54) [1990] 1 WLR 438 (CA).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러한 예외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제한된 상황에서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영국의 법관행동지침은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이 천명하는 6대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관행동지침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법관행동지침은 법관의 특정 행위가 직무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법관의 책임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법관의 개별적 판단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되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성 부분과 법관의 대외 활동 중 상업활동과 이해충돌 상황의 처리 편에서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III.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미국의 규율 및 사례

1. 들어가며

법관의 주식보유를 포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법관의 부적격 여부 판단에 있어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전술한 *Dimes v Proprietors of Grand Junction Canal* 사건⁵⁶⁾의 영향⁵⁷⁾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점점 독자적으로 그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발전시키기에 이르게 된다.⁵⁸⁾

미국의 경우 다른 코먼로 계열 국가와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법관의 부적격 관련 내용을 실정법률로 적극적으로 규율하려는 특징을 가진다.⁵⁹⁾ 미국은 1792년 법관의 부적격에 관한 법률의 제정⁶⁰⁾을 시작으로 법률로 법관의 부적격에

55) [2000] 2 WLR 870 (CA).

56) [1852] 3 HLC 759.

57) 절차를 담당한 법관이 해당 절차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경제적 이해관계(the slightest pecuniary interest)를 가진 경우라고 하여도 당해 법관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시한 *Turney v. State of Ohio*, 273 U.S. 510, 47 S.Ct. 437, 71 L. Ed. 749 (1927) 판결이 그 예이다.

58) Ziona Hochbaum, "Taking Stock: The Need To Amend 28 U.S.C. § 455 To Achieve Clarity and Sensibility in Disqualification Rules for Judges' Financial Holdings", *Fordham L. Rev. Vol. 71 Iss. 4*,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2003, p. 1669, 1677.

59) *Ebner v Official Trustee in Bankruptcy* [1999] 91 FCR 353.

60) Act of May 8, 1792, ch. 36, § 11, 1 Stat. 278-279(Debra Lyn Bassett, "Judicial Disqualification in the Federal Appellate Courts", *Iowa L. Rev. Vol. 87*, University of Iowa, 2002, p. 1213, 1223).

관해 규율하기 시작하였으며 1821년 이를 개정⁶¹⁾하였다. 이후 1911년 해당 법률을 다시 개정⁶²⁾함과 동시에 법관의 불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법관의 부적격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⁶³⁾하였다. 1948년에 이 두 법률은 현재의 28 U.S.C. §§ 455, 144로 다시 제정되었는데,⁶⁴⁾ 이는 법관의 부적격에 관한 중요한 근거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⁶⁵⁾

위의 법률 외에도 미국에서는 연방사법회의에 의해 제정된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과 연방법관행위규범 위원회(Codes of Conduct Committee)의 권고의견(advisory opinion),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모범 법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각 주(州)의 법관행위규범(Code of Judicial Conduct)과 주별로 설치된 위원회에서의 법관행위규범에 관한 권고의견 등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법관의 부적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⁶⁶⁾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규정 및 강령과 권고의견 등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 우선 살피고, 관련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고자 한다.

2. 법관의 주식보유를 규율하는 규정 등

2.1 28 U.S.C. § 455

2.1.1. 조문의 내용

미국 연방법령집(United States Code, U.S.C.) 제28편(Title 28)은 사법부와 사법절차(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편 제455조는

61) Act of Mar. 3, 1821, ch. 51, 3 Stat. 643(*Ibid.*).

62) Act of Mar. 3, 1911, ch. 231, § 20, 36 Stat. 1090(Lyn Bassett, *op. cit.*, p. 1224).

63) Act of Mar. 3, 1911, ch. 231, § 21, 36 Stat. 1090(*Ibid.*).

64) *Ibid.*; Ryan M. McInerney, “Rethinking Judicial Disqualification Based on Campaign Contributors: A Practical Critique of Post-Caperton Proposals and a Call for Greater Transparency”, *Nev. L. J. Vol. 11*, University of Nevada, 2011, p. 815, 818.

65) 13D Fed. Prac. & Proc. Juris. (3d ed.), § 3541; Hochbaum, *op. cit.*, p. 1677; McInerney, *op. cit.*, p. 818.

66) Hochbaum, *op. cit.*, p. 1677.

법관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⁶⁷⁾

67) 동 조항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a) 미합중국의 대법관(judge), 법관, 부판사(magistrate judge)는 누구라도 법원의 절차 내에서 그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에는 당해 절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b)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법관은 회피하여야 한다:

(생략)

(4) 법관이 그 자신 - 개인적 혹은 수탁자 지위를 불문한다 - 이나 배우자, 그와 거주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가 당해 분쟁이 된 사건의 소송물 혹은 당사자와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절차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을 때;

(5) 법관 혹은 그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혹은 그의 배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생략)

(iii) 법관에 의해 당해 절차의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

(이하 생략)

(c) 법관은 법관 자신 - 개인적 혹은 수탁자 지위를 불문한다 - 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의 배우자나 거주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d)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절차”란 변론전 절차와 변론절차, 상소심 절차 혹은 소송의 다른 단계를 포함한다.

(2) 친족의 촌수는 대륙법 체계(civil law system)에 따라 계산한다.

(3) “수탁자 지위”란 유언집행인(executor), 관리인(administrator), 수탁자(trustee), 후견인(guardian) 관계를 포함한다.

(4) “경제적 이해관계”란 코멘토 혹은 형평법(legal or equitable)상의 이익[아무리 적은 경우(however small)라도 포함한다]의 보유와 이사, 고문 기타 당사자가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포함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다:

(i) 증권을 보유하는 상호투자기금 또는 공동투자기금에 대한 소유권은 법관이 그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한 그 증권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ii) 교육 · 종교 · 자선 · 우애 · 공민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iii) 상호보험회사의 증권소유자 또는 상호저축조합의 예금주가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이익은 소송의 결과가 그 이익의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iv) 정부공채에 대한 소유권은 소송의 결과가 그 공채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e) 미합중국의 대법관, 법관, 부판사는 누구라도 (b)항에 열거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당사자의 이익권 포기를 어떤 사유에 근거하여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a)항에서의 부적격 사유에 관하여서만 부적격 사유에 관한 사실을 기록에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이익권의 포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f) 본조에서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나 법관, 부판사, 도산법원 법관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상당한 시간을 사건에 투자한 이후, 배당 이후의 시점에서 그(혹은 그녀)가 자신이 스스로 개인 혹은 수탁자의 지위로 당사자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미성년 자녀가 그러한 경우(경제적 이해관계가 절차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인해 회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만약 해당 대법관이나 법관, 부판사, 도산법원

2.1.2 설명

2.1.2.1 원칙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적 이해관계란 당해 소송에서의 소송물에 포함된 경제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⁶⁸⁾ 경제적 이해관계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리 적은(however small)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per se) 법관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한다.⁶⁹⁾

2.1.2.1.1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로 인한 법관의 부적격(회피) 규정은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적용되며, 당해 이해관계 충돌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⁷⁰⁾ 법관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며, 해당 의무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⁷¹⁾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존하거나 미래의 그것이라도 어느 정도는 확정적이어야 하며,⁷²⁾ 단순히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조건부 형태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⁷³⁾

당사자와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당사자의 개념에는 대표당사자소송에서의

법관, 그(혹은 그녀)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처분한 경우라면 더이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8) *In re Drexel Burnham Lambert Inc.*, 861 F.2d 1307 (2d Cir. 1988).

69) 13D Fed. Prac. & Proc. Juris. (3d ed.), § 3546; Brian P. Leitch, "Judicial Disqualif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A Proposal to Conform Statutory Provisions to Underlying Policies", *Iowa L. Rev.* Vol. 67, University of Iowa, 1982, p. 525, 530. 법관이 30 USD 이하의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법관이 절차에서 배제될 경우 5년 이상 진행된 복잡한 반독점법 관련 소송이 새로운 법관에게 다시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관이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한 판례로 *In re Cement and Concrete Antitrust*, 515 F.Supp. 1076, 1079 (D.Ariz. 1981). 1년에 30 USD의 배당금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해당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법관의 부적격 사유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로 *Davis v. Xerox*, 811 F.2d 1293 (9th Cir. 1987), cert. denied, 484 U.S. 966, 108 S. Ct. 457, 98 L. Ed. 2d 397 (1987).

70) *Shell Oil Co. v. U.S.*, 672 F.3d 1283 (Fed. Cir. 2012).

71) *In re McCarthy*, 368 F.3d 1266 (10th Cir. 2004).

72) *Kinnear-Weed Corp. v. Humble Oil & Refining Co.*, 324 F. Supp. 1371 (S.D. Tex. 1969), judgment aff'd, 441 F.2d 631 (5th Cir. 1971).

73) *Mavis v. Commercial Carriers, Inc.*, 408 F. Supp. 55 (C.D. Cal. 1975); *Weingart v. Allen & O'Hara, Inc.*, 654 F.2d 1096 (5th Cir. 1981); *In re Virginia Elec. & Power Co.*, 539 F.2d 357 (4th Cir. 1976).

집단 구성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⁷⁴⁾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관련한 대표당사자소송 사건⁷⁵⁾에서 법원은 법관 및 그의 가족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잠재적) 집단 구성원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해당 법관이 사건에서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⁷⁶⁾

주식의 소유에 대해 보면, 법관이 당사자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부적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만 과거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적격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다.⁷⁷⁾ 또한 법관이 단지 계약상 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⁷⁸⁾ 법관이 주식구매의 청약자(subscriber)의 지위에 있다가 증권의 도달 전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 또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⁷⁹⁾ 일단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라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 1주의 주식이라도 보유할 경우 이는 부적격(회피) 사유를 구성한다.⁸⁰⁾

2.1.2.1.2 배우자 기타 친족의 경제적 이해관계

법관은 그의 배우자나 거주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28 U.S.C. § 455(c)]. 다만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모든 재산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고,⁸¹⁾ 법관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의 친구가 법관의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을 설립한 경우 법관은 해당 신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문제될 경우 문제가 된 사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⁸²⁾

74) *In re Cement Antitrust Litigation* (MDL No. 296), 688 F.2d 1297 (9th Cir. 1982), judgment aff'd, 459 U.S. 1191, 103 S. Ct. 1173, 75 L. Ed. 2d 425 (1983) and opinion supplemented on other grounds, 709 F.2d 521 (9th Cir. 1983).

75) *Berthelot v. Boh Bros. Constr. Co.*, 431 F.Supp.2d 639 (E.D.La. 2006).

76) *Ibid.*

77) 48A C.J.S. Judges § 285.

78) *Webb v. Town of Eutaw*, 9 Ala. App. 474, 63 So. 687 (1913).

79) *Town of Andes v. Ely*, 158 U.S. 312, 15 S. Ct. 954, 39 L. Ed. 996 (1895).

80) Charles Gardner Geyh, *Judicial Disqualification: An Analysis of Federal Law 3rd ed.*, Federal Judicial Center, 2020, p. 61.

81) U.S. Compendium of Selected Opinions § 3.1-1(b) (1999).

82) *Ibid.* at § 3.1-2(g).

2.1.2.2 예외

2.1.2.2.1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8 U.S.C. § 455(d)(4)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법관이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보유하는 상호투자기금 또는 공동투자기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와 ② 법관이 교육·종교·자선·우애·공민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③ 법관이 상호보험회사의 증권소유자 또는 상호저축조합의 예금주가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나 소송의 결과가 그 이익의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관이 정부공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나 소송의 결과가 그 공채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그것이다[28 U.S.C. § 455(d)(4)(i)-(iv)].

2.1.2.2.2 문제가 된 경제적 이익을 처분한 경우 등

다만 법관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미성년 자녀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을 당해 사건에 투자하였고, 이후 그러한 이익을 처분한 경우에는 더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8 U.S.C. § 455(f)].⁸³⁾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법관으로 하여금 그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건에서 회피하여야 하는 의무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건처리를 피해야 할 현실적 이유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⁸⁴⁾

해당 규정은 단지 당사자 중 일방 혹은 소송의 소송물과 관련한 아주 작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법관에게도 아울러 적용된다.⁸⁵⁾ 상당한 시간을 당해 사건에 투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달력상의 일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해당 법관이 사건의 준비 등을 위하여 보낸 실질적 업무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⁸⁶⁾

83) *Maharam v. Patterson*, 369 Fed. Appx. 240 (2d Cir. 2010); *Shell Oil Co. v. U.S.*, 672 F.3d 1283 (Fed. Cir. 2012).

84) 32 Am. Jur. 2d Federal Courts § 93; 13D Fed. Prac. & Proc. Juris. § 3546 (3d ed.).

85) *In re Literary Works in Electronic Databases Copyright Litigation*, 509 F.3d 136 (2d Cir. 2007).

86) *In re Certain Underwriter*, 294 F.3d 297 (2d Cir. 2002).

2.2 법관행위규범 등

2.2.1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은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에 의해 채택된, 법관의 윤리와 관련한 일련의 규범과 지침을 말하며,⁸⁷⁾ 1973. 4. 5. 처음으로 채택된 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⁸⁸⁾ 연방법관행위규범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법원의 법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관의 청렴성과 독립, 직무에의 충실과 공정, 허용되는 외부활동, 불공정의 외관 형성의 회피 등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법관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⁸⁹⁾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서는 ‘법관은 그의 사법적 직무를 공정하고(fairly) 공정하며(impartially), 근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Canon 3에 관련 규정[Canon 3C(1), 3C(2), 3C(3) 등]을 두고 있다.⁹⁰⁾

이외에도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을 제정하는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의 연방법관행위규범 위원회(Codes of Conduct Committee)는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한 권고의견 또한 발표하고 있다.⁹¹⁾

2.2.2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법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2.2.2.1 개관

미국 변호사협회의 모범 법관행위규범은 법관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부재상황을 막기 위해 1924. 8. 최초로 마련되었다.⁹²⁾ 다만 몇 개의 주가 이를 받아들인

87) United States Courts,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https://www.uscourts.gov/judges-judgeships/code-conduct-united-states-judges#d>>, last visited: Nov. 24, 2023.

88) Committee on Codes of Conduct, “2A Guide to Judiciary Policy (2019)”,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code_of_conduct_for_united_states_judges_effective_march_12_2019.pdf>, last visited: Nov. 24, 2023.

89) United States Courts,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https://www.uscourts.gov/judges-judgeships/code-conduct-united-states-judges#d>>, last visited: Nov. 24, 2023.

90) *Ibid.*

91) United States Courts, “Published Advisory Opinions”, <<https://www.uscourts.gov/rules-policies/judiciary-policies/ethics-policies/published-advisory-opinions>>, last visited: Nov. 24, 2023.

92) Andrew J. Lieven/Avern Cohn, “The Federal Judiciary and the ABA Model Code: The Parting of the Ways”, *Justice Syst. J. Vol. 28 No. 3*,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07, p. 271, 272; American

것 외에는 연방법원이나 주법원 법관에 대해 법적 효력은 가지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법관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1924년 - 1972년 사이의 연방법원 판례 중 39개가 이를 인용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⁹³⁾ 이후 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의 주요한 참고가 되었으며, 1972년의 개정과 1990년의 개정, 2007년의 개정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⁹⁴⁾

2.2.2.2 내용

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⁹⁵⁾는 ‘법관은 그의 사법적 직무를 공정하고 유능하며, 부지런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Canon 2에 부적격(disqualification)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규정(Canon 2.11)⁹⁶⁾을 두고 있다.⁹⁷⁾

법관의 부적격을 규율하는 것은 이익충돌의 상황에서 반드시 법관이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이익충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일반 대중이 가지므로 이러한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Bar Association, Report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922-1924, pp. 65-71.

93) Andrew J. Lievense/Avern Cohn, *op.cit.*, p. 274.

94) 개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ndrew J. Lievense/Avern Cohn, *Ibid.*, p. 276 ff.

95) ‘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의 번역에 대해서는 여러 번역이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모범법관행위규범’이라고 이를 번역하는 문헌과(송현정, 미국의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8) ‘모범법관행동규범’이라고 이를 번역하는 문헌(양시훈/최유경,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이 발견된다.

96) Canon 2.11의 내용 중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법관은 그(혹은 그녀)의 불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상황에서는 해당 절차에서 회피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생략)

(3) 법관이 그 자신 - 개인적 혹은 수탁자 지위를 불문한다 - 이나 배우자, 동거동반자관계의 파트너(domestic partner), 부모, 자녀, 혹은 그와 거주를 같이 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당해 분쟁이 된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라는 것을 인지한 때

(생략)

(B) 법관은 법관 자신 - 개인적 혹은 수탁자 지위를 불문한다 - 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의 배우자나 동거동반자관계의 파트너, 그와 거주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7) ABA-AJC Canon 2.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⁹⁸⁾ 이로 인해 부적격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정성의 외관(*appearance of impartiality*)이라고 한다.⁹⁹⁾

2.2.2.2.1 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념은 최소한도(*de minimus*) 이상의 법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⁰⁾ 1972년 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의 경우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을 사용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기업의 단 1주의 주식이라도 법관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였으나 1990년의 개정 이후 현재의 기준으로 변경되었다.¹⁰¹⁾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 법관이나 일부 주의 법관의 경우 여전히 ‘아무리 적은 이해관계’ 기준에 의해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가 판단된다고 한다.¹⁰²⁾

2.2.2.2.2 예외사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그러한 법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해당 이해관계가 법관이 담당하고 있는 절차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¹⁰³⁾

2.2.3 주(州)의 법관행위규범

미국의 각 주는 2007년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법관행위규범을 참고하여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약 37개 주가 수정된 모범 법관행위규범을 채택하였고,¹⁰⁴⁾ 8개 주는 주의 법관행위규범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¹⁰⁵⁾ 1개

98) 박준, “법관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제159호, 한국법학원, 2017, 137쪽; 송현정, 앞의 보고서, 41-42쪽.

99) 송현정, 위의 보고서, 42쪽.

100) ABA-AJC Canon 2. cmt. [6].

101) Cynthia Gray, *An Ethics Guide for Judges & Their Families*, American Judicature Society, 2001, p. 29.

102) Cynthia Gray, *Ibid.*

103) ABA-AJC Canon 2. cmt. [6].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뮤추얼펀드나 통상의 투자펀드 내에 지분을 가지는 경우와 ② 법관 혹은 그 배우자나 동거동반자관계의 파트너, 부모 혹은 자녀가 이사, 임원, 자문역 기타 참여하고 있는 교육, 종교, 자선, 우애(*fraternal*), 시민단체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③ 법관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구성원 등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association or credit union*) 등에 대하여 예금 기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④ 법관이 정부증권의 발행자에 관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주¹⁰⁶)가 주의 법관행위규범의 최종 수정안을 제안하였다.¹⁰⁷⁾

그 외에도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각 주는 다양한 권고의견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¹⁰⁸⁾

3. 관련 사례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사례 중에서 법관 및 그의 배우자나 기타 친족의 주식보유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1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사례

3.1.1 *James v. Acands, Inc.* 사건

복수의 피고 기업이 생산한 상품으로 인해 석면 노출의 피해를 본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법관의 배우자가 피고 중 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해당 법관이 회피한 사건이다.¹⁰⁹⁾

3.1.2 *United States v. Rogers* 사건

우편 사기(mail fraud) 사건에서 사실심 법관이 사기 피해를 본 은행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건이다.¹¹⁰⁾ 해당 사건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인 은행을 당사자로

104) 애리조나주와 아칸소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조지아주, 하와이주, 아이다호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켄터키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노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오리건주, 펜실베이니아주, 로드아일랜드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 유타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이다(American Bar Association, “Jurisdictional Adoption of Revised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resources/judicial_ethics_regulation/map>, last visited: Nov. 24, 2023.).

105) 알래스카주, 일리노이주, 루이지애나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버몬트주이다(*Ibid.*).

106) 미시시피주이다(*Ibid.*).

107) *Ibid.*

108) 예를 들어 United States Courts, “Virginia Advisory Opinion 00-5”, <http://www.courts.state.va.us/agencies/jirc/opinions/2000.00_5.html>, last visited: Nov. 24, 2023 등이 있다.

109) 1996WL131503 (N.D. Ill. 1996).

110) 119 F.3d 1377 (9th Cir. 1997).

볼 수 있는가와 사기죄의 피해자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28 U.S.C. § 455(b)(4)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¹¹¹⁾ 이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의 피해자는 당사자로 볼 수 없고, 피해자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28 U.S.C. § 455(b)(4)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두 가지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¹¹²⁾

3.1.3 *Department of Energy v. Brimmer* 사건

정유사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를 상대로 석유긴급배분법(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에 근거한 규제 프로그램이 무효임을 구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¹¹³⁾ 사실심 법관은 원고의 잠정적 금지명령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에너지부는 해당 법관이 소송에서의 원고와 같은 규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불복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법관이 당해 소송에서의 소송물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는 문제된 법관이 소송의 결과와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¹¹⁴⁾ 또한 법원은 해당 법관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그러한 정도의 이해관계로는 이를 주된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¹⁵⁾

3.1.4 *United States v. Nobel* 사건

14개 정도의 운수회사 주식을 사기로 편취한 자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다.¹¹⁶⁾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피해 기업 중 한 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약 10,000 – 15,000 USD 정도였다. 피고인은 해당 법관이 피해 기업 중 한 곳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가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

111) *United States v. Rogers*, 119 F.3d 1377 (9th Cir. 1997).

112) *Ibid.*

113) 673 F.2d 1287 (Tenn. Emer. Ct. App. 1982).

114) *Department of Energy v. Brimmer* 673 F.2d 1287 (Tenn. Emer. Ct. App. 1982).

115) *Ibid.*

116) 696 F.2d 231 (3rd Cir. 1982) *cert. denied*, 462 U.S. 1118 (1983).

였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¹¹⁷⁾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①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피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당해 소송과 주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②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 정도로는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③ 법관의 소송 진행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외관을 형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¹¹⁸⁾

3.1.5 *State of California v. Kleppe* 사건

해당 사건에서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12년간 피고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약 7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¹¹⁹⁾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법관이 계속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28 U.S.C. § 455와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Canon 3C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와 같은 법관의 주식보유는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과와 관련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¹²⁰⁾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문제된 법관이 당해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8 U.S.C. § 455와 연방법관행위규범 Canon 3C에 의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²¹⁾

3.1.6 *Exxon Mobil Corporation v. United States* 사건

석유회사(Exxon Mobil)가 정부를 상대로 양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세금조항을 근거로 하여 환경정화비용(environmental cleanup cost)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¹²²⁾ 원고는 2009. 3.과 2009. 12.에 서로 다른 장소에 대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두 사건은 병합되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다른 네 개의 석유회사(Shell Oil Company, Atlantic Richfield Company, Texaco, Inc., Union Oil

117) *United States v. Nobel* 696 F.2d 231 (3rd Cir. 1982) cert. denied, 462 U.S. 1118 (1983).

118) *Ibid.*

119) 431 F.Supp. 1344 (1977).

120) *State of California v. Kleppe* 431 F.Supp. 1344 (1977).

121) *Ibid.*

122) 110 Fed.Cl. 407 (2013).

Company)도 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¹²³⁾ 이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공동원고 중 일부의 모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인정되었다.¹²⁴⁾ 이후 문제된 법관이 사건에 재배당되어 원고인 석유회사(Exxon Mobil)에 유리한 사실심리 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정부는 다른 석유회사의 관련 사건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하는 법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병합된 사건에서 편견 및 부적절의 외관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¹²⁵⁾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의 당사자와 법관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 사건에서의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¹²⁶⁾ 또한 관련 사건에서의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문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편견 및 부적절의 외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¹²⁷⁾

3.1.7 *United States v. Gedinez* 사건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관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를 이유로 해당 법관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대해 불복한 사건이다.¹²⁸⁾ 항소법원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당해 소송과 주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주식보유는 4,100주 정도로 이는 피해자 은행의 발행 주식 총수인 4,500,000,000주의 약 0.000091%에 불과하여 현저하게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라고 보았다.¹²⁹⁾ 또한 항소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주식 총수의 약 0.007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법관의 주식보유는 매우 적은 비율의 주식보유이므로 해당 법관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른 판결¹³⁰⁾을 인용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본 사건에서의 법관의 주식보유는 형사사건에서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123) *Shell Oil v. United States*, 80 Fed.Cl. 411 (2008).

124) *Ibid.*

125) *Exxon Mobil Corporation v. United States* 110 Fed.Cl. 407 (2013).

126) *Ibid.*

127) *Ibid.*

128) 280 Fed.Appx. 47 (2008).

129) *United States v. Gedinez*, 280 Fed.Appx. 47 (2008).

130) *United States v. Ravich*, 421 F.2d 1196 (2d Cir. 197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¹³¹⁾

3.2 이해관계의 많고 적음의 기준에 관한 사례

3.2.1 *Headwaters, Inc. v. Bureau of Land Management, Medford Dist.* 사건

법관이 당사자에게 그의 배우자가 피고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 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계속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잠정적 구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과 잠정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다.¹³²⁾ 법원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무리 적더라도 28 U.S.C. § 455(b)(4)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적격 사유는 당사자의 이익권 포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법원은 당사자와의 논의 후에 해당 사건을 다시(de novo) 심리하였고,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3.2.2 *Chase Manhattan Bank v. Affiliated FM Ins. Co.* 사건

연방지방법원 법관이 원고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¹³³⁾ 법관의 주식보유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법관이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대해 불복한 사건이다.¹³⁴⁾ 연방항소법원은 문제된 법관의 주식보유액수가 개인 재산의 1%에 불과할 경우라고 하여도 당해 절차와 관련이 있다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해당 법관의 부적격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아 해당 법관이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¹³⁵⁾ 또한 일단 부적격 사유가 성립되었다면 후에 문제된 법관이 그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법관의 부적격에 관한 흠이 치유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³⁶⁾

131) *United States v. Gedinez*, 280 Fed.Appx. 47 (2008).

132) 665 F.Supp. 873 (D. Or. 1987).

133) 343 F.3d 120 (2d Cir. 2003).

134) *Chase Manhattan Bank v. Affiliated FM Ins. Co.* 343 F.3d 120 (2d Cir. 2003).

135) *Ibid.*

136) *Ibid.*

3.3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관한 사례

3.3.1 *NEC Corp. v. Intel Corp.* 사건

법관이 투자클럽(investment club)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해당 클럽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해 법관에게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건이다.¹³⁷⁾ 법원은 투자클럽의 경우 부적격 사유의 예외조항인 28 U.S.C. § 455(b)(4)의 상호투자기금 또는 공동투자기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관에게 부적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투자클럽의 경우 법관이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고 24명의 멤버만으로 운영되던 회원제 클럽이었으며, 주식의 매수 혹은 매도결정은 회원모임에서 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투자기금 또는 공동투자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3.3.2 *United States v. Farkas* 사건

은행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두 개의 뮤추얼펀드에 투자를 하고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CD)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건이다.¹³⁸⁾ 피고인은 법관이 보유하고 있던 뮤추얼펀드와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해당 법관은 사건과 관련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그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편견 혹은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다투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법관의 재산명세서(financial statements)에 존재하는 뮤추얼펀드와 양도성예금증서는 28 U.S.C. § 455(d)(4)(i)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관이 해당 펀드의 투자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¹³⁹⁾ 추가로 법원은 만약 해당 법관의 뮤추얼펀드와 양도성예금증서 보유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건의 정황을 살펴볼 때 문제된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접적인

137) 654 F. Supp. 1256, 2 U.S.P.Q.2d (BNA) 1528 (N.D. Cal. 1987), order vacated on other grounds, appeal dismissed, 835 F.2d 1546 (9th Cir. 1988), related reference, 10 U.S.P.Q.2d (BNA) 1177, 1989 WL 67434 (N.D. Cal. 1989).

138) 149 F.Supp.3d 685 (2016).

139) *United States v. Farkas*, 149 F.Supp.3d 685 (2016).

피해자가 아니며,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자도 아니므로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편견 혹은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¹⁴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해당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⁴¹⁾

3.3.3 *Central Telephone Co. of Virginia v. Sprint Communications Co. of Virginia, Inc.* 사건
기존 시내전화사업자(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ILEC)인 원고가 경쟁적 시내전화사업자(competing local exchange carrier, CLEC)인 피고를 상대로 상호접속 협정(interconnection agreement, ICA)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¹⁴²⁾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동일한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피고의 반소는 관할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한 후 본소에 대해 원고승소판결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개인 퇴직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의 형태로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해당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대해 불복하였다.

항소법원은 개인 퇴직 계좌의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28 U.S.C. § 455(b)에서 말하는 당사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는 28 U.S.C. § 455(d)(4)(i)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¹⁴³⁾ 또한 해당 법관의 주식보유형태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그러한 형태의 주식보유가 합리적 관점의 제3자의 기준에서 편견 혹은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문제된 법관이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¹⁴⁴⁾

140) *Ibid.*

141) *Ibid.*

142) 715 F.3d 501 (2013).

143) *Central Telephone Co. of Virginia v. Sprint Communications Co. of Virginia, Inc.*, 715 F.3d 501 (2013).

144) *Ibid.*

3.4 경제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례

3.4.1 *In re Certain Underwriter* 사건

반독점법 관련 대표당사자소송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사건배당 이후에 자신이 피고 기업 중 2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대표당사자소송 원고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사건이다.¹⁴⁵⁾ 해당 법관은 즉시 당사자에게 이해충돌 상황임을 고지하고 주식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집단에서 제외 신청(opt-out)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하여 28 U.S.C. § 455(b)(4)의 부적격에 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¹⁴⁶⁾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대표당사자소송과 관련하여 사소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관이 배당 이후에 즉시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법관이 계속하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28 U.S.C. § 455(f)의 규정취지라고 보아 법관의 계속된 절차참여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법관이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과정이 비배심 재판(bench trial) 진행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이미 부적격에 관한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법관의 부적격에 관한 흠이 치유될 수 없다고 본 판례¹⁴⁷⁾도 존재한다.

3.4.2 *Kidder, Peabody & Co. v. Maxus Energy Corp.* 사건

법관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인 것을 인지한 직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다.¹⁴⁸⁾ 법원은 법관의 해당 주식매도 행위가 28 U.S.C. § 455(f)에 따라 그의 회피사유에 대한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시간과 자원, 사법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¹⁴⁹⁾

145) 294 F.3d 297 (2d Cir. 2002).

146) *In re Certain Underwriter*, 294 F.3d 297 (2d Cir. 2002).

147) *Chase Manhattan Bank v. Affiliated FM Ins. Co.*, 343 F.3d 120 (2d Cir. 2003).

148) 925 F.2d 556 (2d Cir. 1991).

149) *Kidder, Peabody & Co. v. Maxus Energy Corp.*, 925 F.2d 556 (2d Cir. 1991).

3.4.3 *United States v. Lauersen* 사건

보험사기(insurance fraud)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법관이 피해자인 보험회사 중 하나의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 사건이다.¹⁵⁰⁾ 이 사건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회사가 피고로부터 금전배상(monetary restitu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금전배상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으므로 그 회사는 문제된 법관이 계속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전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¹⁵¹⁾ 법원은 이에 대해 28 U.S.C. § 455(b)(4)에서의 법관의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문제된 회사가 금전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28 U.S.C. § 455(f)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그 이유로 들었다.¹⁵²⁾

3.4.4 *Perpich v. Cleveland Cliffs Iron Company et al.*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관과 그의 부모 및 형제가 피고 기업 중 두 군데의 주식을 예전에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법관이 당해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며 다툰 사건이다.¹⁵³⁾ 다만 법관과 그의 부모 및 형제자매는 이미 해당 주식을 처분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문제된 법관 본인과 그의 가족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였을 뿐만 아니라 11개의 피고 기업 중 두 군데의 주식에 불과하고, 그 보유액수 또한 많지 않아 이를 부적격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¹⁵⁴⁾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문제되기 전 이미 이를 처분하였고, 그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보아도 당해 법관이 편견 혹은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⁵⁵⁾

150) *United States v. Lauersen*, 348 F.3d 329 (2d Cir. 2003).

151) *Ibid.*

152) *Ibid.*

153) 927 F.Supp. 226 (1996).

154) *Perpich v. Cleveland Cliffs Iron Company et al.*, 927 F.Supp. 226 (1996).

155) *Ibid.*

4. 정리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미국에서의 여러 논의를 정리해보면 ① 다른 코먼로 계열 국가와는 달리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법관의 주식보유를 포함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과 ② 연방과 주 차원에서 실정법률 외에도 행동강령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점, ③ 연방과 주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의 다양한 권고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④ 이전의 엄격한 기준(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 ‘however small’ 기준)에서 벗어나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완화된 기준(당해 법관의 부적격이 의심될 정도로 최소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해야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 ‘de minimis’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마지막의 논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법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이나 최소한도의(*de minimis*)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주와는 달리 28 U.S.C. § 455나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 일부 주의 법관행동강령의 경우 여전히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존재한다.¹⁵⁶⁾ 이 견해는 오늘날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투자를 통한 재산취득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보다는 최소한도(*de minimis*)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¹⁵⁷⁾ ① 현대의 경제생활에 일련의 투자활동은 필수적이며 (연방법원의) 법관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¹⁵⁸⁾과 ② 현재의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의 경우 오늘날의 경제생활에 일련의 투자활동이 필수적이며 법관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¹⁵⁹⁾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¹⁶⁰⁾

156) 대표적으로 Hochbaum, *op. cit.*, p. 1669.

157) Hochbaum, *Ibid.*, p. 1693.

158) Jeffrey M. Shaman/Steven Lubet/James J. Alfani, *Judicial Conduct and Ethics 3d ed.*, LexisNexis, 2000, § 7.01.

159) Harold S. Levy, “Judicial Recusals”, *Pace L. Rev. Vol. 2 Iss. 1*, Pace University, 1982, p. 35, 41.

위의 견해를 반영하여 일부 주에서는 기존의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에 따르던 규정을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장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¹⁾

IV.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줄 수 있는 시사점

1.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관

우리의 경우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와 ②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이하의 규정, ③ 주식의 백지신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와 ④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 및 그에 근거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2조의2와 법원의 부서별 관련 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¹⁶²⁾ 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⑥ 법관의 영리업무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⑦ 경제적 행위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관윤리강령 제6조, ⑧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⑩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볼 때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상당히 촘촘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관의 경제적

160) Hochbaum, *op. cit.*, p. 1672에서는 ‘however small’ 기준을 택할 경우 법관이 투자를 하는 동시에 이해충돌 및 이로 인한 부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61) 대표적으로 New York County Lawyers’ Association, Report of The Task Force on Judicial Selection Sub-Committee on Disqualifying Economic Interest, 2004, pp. 2-3에서는 Title 22 New York Code, Rules and Regulations(NYCRR) § 100.0(D)의 규정에 대해 종전의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을 삭제하고 최소한도(*de minimis*)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162) 행정예규 제1288호, 시행 2022. 3. 1.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체계 하에서, 앞에서 본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 법관의 주식보유 제한에 관한 정당성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는 법관의 주식보유나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 힘들다. 비록 법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관의 주식보유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법관의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것¹⁶³⁾이지만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현대의 경제생활에 일련의 투자활동은 필수적이며 법관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¹⁶⁴⁾을 반영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원이 법관이 되는 것을 주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관으로 하여금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¹⁶⁵⁾

3. 주식보유에 대한 일반적 권고의견 마련

3.1 필요성

법원의 부서별 관련 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는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법관 외에도 법관 전체에 적용되는 주식보유에 대한 권고의견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즉 법원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일반적 권고의견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163) Thomas White, "To Have or Not to Have -Conflicts of Interest and Financial Planning for Judge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35 No. 1*,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1970, p. 202, 208.

164) Shaman/Lubet/Alfini, *op. cit.*, § 7.01.

165) Premela Thiagarajan, "Disqualification of Judges for Pecuniary or Proprietary Interests in the Outcome of Litigation", *AIAL Forum No. 38*, Australian Institute of Administrative Law, 2003, p. 13, 27.

3.2 권고의견의 내용

3.2.1 과다한 주식보유나 빈번한 주식거래의 자제 권고

법관의 과다한 주식보유나 빈번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차원에서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접적인 규제의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와 같은 취지를 밝히고 과다한 주식보유나 빈번한 주식거래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에서 그 내용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 경우 과다한 주식보유나 빈번한 주식거래를 판단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법관의 과다한 주식보유나 빈번한 주식거래가 사법부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점 정도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3.2.2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보유주식 회사의 관련 재판 회피 권고

법관이 담당한 사건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회피 규정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법관이 회피를 고려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예방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해 사건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법관의 주식보유가 단 1주라도 해당 법관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아 회피를 권고할 것인지, 아니면 법관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정도로 최소한의 주식을 보유하여야만 부적격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아 회피를 권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법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이나 최소한도(*de minimis*)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주와는 달리 28 U.S.C. § 455나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 일부 주의 법관행동강령의 경우 여전히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존재한다.¹⁶⁶⁾ 또한 영국에서도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

166) 대표적으로 Hochbaum, *op. cit.*, p. 1669.

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최소한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는 오늘날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투자를 통한 재산취득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보다는 최소한도(*de minimis*)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하고 있는데,¹⁶⁷⁾ ① 현대의 경제생활에 일련의 투자활동은 필수적이며 (연방법원의) 법관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¹⁶⁸⁾과 ② 현재의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¹⁶⁹⁾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¹⁷⁰⁾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법관의 가족 및 친족에 대한 규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법관 가족의 주식거래를 일정한 요건 아래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식거래상황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을 통한 주식보유 및 거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가족 및 친족 또한 주식보유 및 거래의 규율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관이 그의 가족의 주식거래 상황을 모두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법관의 가족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지 등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관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를 안내하는 자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7) Hochbaum, *Ibid.*, p. 1693.

168) Shaman/Lubet/Alfini, *op. cit.*, § 7.01.

169) Levy, *op. cit.*, p. 41.

170) Hochbaum, *op. cit.*, p. 1672에서는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유라도 법관의 부적격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준을 택할 경우 법관이 투자를 하는 동시에 이해충돌 및 이로 인한 부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5. 이해당사자에 대한 주식보유 사실의 공개

영국의 법관행동지침에서는 법관의 편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거나, 편견의 외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당사자들에게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 심리 이전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법관에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¹⁷¹⁾ 법관의 주식보유로 인한 당해 사건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가 법관의 부적격 사유를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의 외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미리 공개하여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를 고려하거나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해관계의 공개 후 당사자가 해당 법관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적격 사유의 흠이 치유된다고 본 사례도 다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공개 이후 당사자들의 동의를 통한 흠의 치유 또한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에 대한 주식보유 사실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규정과 대표적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해당 국가의 사례에서 현행 우리의 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법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의 경우 법관의 주식보유 자체에 대해 이를 제한하지는 않으며,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대 경제생활과도 맞지 아니하며, 우수한 법관 지원자에게 법원으로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 하에서의 규제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71)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op. cit.*, p. 9.

참고문헌

1. 단행본

- Charles Gardner Geyh, *Judicial Disqualification: An Analysis of Federal Law 3rd ed.*, Federal Judicial Center, 2020.
- Cynthia Gray, *An Ethics Guide for Judges & Their Families*, American Judicature Society, 2001.
- Grant Hammond, *Judicial Recusal -Principles, Process and Problems-*, Hart Publishing, 2009.
- Jeffrey M. Shaman/Steven Lubet/James J. Alfini, *Judicial Conduct and Ethics 3d ed.*, LexisNexis, 2000.

2. 학술지

- 박준, “법관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제159호, 한국법학원, 2017, 124-161쪽.
- Andrew J. Lievense/Avern Cohn, “The Federal Judiciary and the ABA Model Code: The Parting of the Ways”, *Justice Syst. J. Vol. 28 No. 3*,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07, pp. 271-282.
- Brian P. Leitch, “Judicial Disqualif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A Proposal to Conform Statutory Provisions to Underlying Policies”, *Iowa L. Rev. Vol. 67*, University of Iowa, 1982, pp. 525-530.
- Debra Lyn Bassett, “Judicial Disqualification in the Federal Appellate Courts”, *Iowa L. Rev. Vol. 87*, University of Iowa, 2002, pp. 1213-1256.
- Frank A. Sharman, “Feudal Copyholder and Industrial Shareholder: The Dimes Case”, *Journal of Legal History Vol. 10 Iss. 1*, Taylor & Francis, 1989, pp. 71-89.
- Frederick F. Shauer, “English Natural Justice and American Due Process: An Analytical Comparison”, *Wm. & Mary L. Rev. Vol. 18 Iss. 1*, Marshall Wythe School of Law, 1976, pp. 47-72.
- Harold S. Levy, “Judicial Recusals”, *Pace L. Rev. Vol. 2 Iss. 1*, Pace University, 1982, pp. 35-46.
- John P. Frank, “Disqualification of Judges”, *Yale L. J. Vol. 56 No. 4*, Yale Law School,

- 1947, pp. 605-639.
- John R. Allison, “A Process Value Analysis of Decision-Maker Bias: The Case of Economic Conflicts of Interest”, *Am. Bus. L. J. Vol. 32 Iss. 4*, Wiley-Blackwell, 1996, pp. 481-540.
- Philip Bryden,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Disqualification of Judges”, *The Canadian Bar Review Vol. 82 No. 3*, Canadian Bar Association, 2003, pp. 555-596.
- Premela Thiagarajan, “Disqualification of Judges for Pecuniary or Proprietary Interests in the Outcome of Litigation”, *ALAL Forum No. 38*, Australian Institute of Administrative Law, 2003, pp. 13-35.
- Ryan M. McInerney, “Rethinking Judicial Disqualification Based on Campaign Contributors: A Practical Critique of Post-Caperton Proposals and a Call for Greater Transparency”, *Nev. L. J. Vol. 11*, University of Nevada, 2011, pp. 815-848.
- Thomas White, “To Have or Not to Have -Conflicts of Interest and Financial Planning for Judge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35 No. 1*,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1970, pp. 202-228.
- Ziona Hochbaum, “Taking Stock: The Need To Amend 28 U.S.C. § 455 To Achieve Clarity and Sensibility in Disqualification Rules for Judges’ Financial Holdings”, *Fordham L. Rev. Vol. 71 Iss. 4*,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2003, pp. 1669-1720.

3. 웹사이트

- American Bar Association, “Jurisdictional Adoption of Revised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resources/judicial_ethics_regulation/map>, last visited: Nov. 24, 2023.
- British Farthings, “A Brief History of the Farthing Coin”, <<http://www.britishfarthings.com/history.html>>, last visited: Nov. 24, 2023.
- Committee on Codes of Conduct, “2A Guide to Judiciary Policy (2019)”,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code_of_conduct_for_united_states_judges_effective_march_12_2019.pdf>, last visited: Nov. 24, 2023.
-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Guide to Judicial Conduct – Revised March 2018”, <<https://www.judiciary.uk/publications/guide-to-judicial-conduct>>, last visited: Nov.

24, 2023.

United States Courts, “Published Advisory Opinions”, <<https://www.uscourts.gov/rules-policies/judiciary-policies/ethics-policies/published-advisory-opinions>>, last visited: Nov. 24, 2023.

United States Courts,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https://www.uscourts.gov/judges-judgeships/code-conduct-united-states-judges#d>>, last visited: Nov. 24, 2023.

4. 기타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2012.

송현정, 미국의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8.

양시훈/최유경,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3D Fed. Prac. & Proc. Juris. (3d ed.).

32 Am. Jur. 2d Federal Courts.

48A C.J.S. Judges.

American Bar Association, Report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922-1924.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Guide to Judicial Conduct, 2020.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Guide to Judicial Conduct 2013, 2013.

New York County Lawyers' Association, Report of The Task Force on Judicial Selection Sub-Committee on Disqualifying Economic Interest, 2004.

U.S. Compendium of Selected Opinions, 1999.

[Abstract]

Regulatory Cases on Judge's Stockholding and Trading and Their Implications

KIM, Junghwan*

Conflicts of interest are as critical for judges as they are for public officials. Specifically, the ownership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represent a significant conflict of interest issue. However, this topic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foreign cases related to judges' stock ownership and trading, with a focus on the UK and the US, in order to initiate discussions on this subject. The article will initially introduce cases from the UK and US concerning judges' shareholdings and transactions, emphasizing regulations and illustrative case law. Subsequently, it will briefly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cases for our current system.

[Key Words] conflict of interest, disqualification of judge, automatic disqualification rule, judge's shareholding and trading, Guide to Judicial Conduct

* Research Fellow,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JPRI), Ph.D. in Law